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준비위원회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준비위원
발 신 회,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
(연락처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T.011-417-9977, gaemy@pspd.org)
제 목 3대개혁입법 관련 민주당 정책위 면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의 건
날 짜 2000. 12. 29. (총 2 쪽)

보도자료

마지막 경고 --

3대 개혁입법을 회기 내 처리하라

(3대개혁입법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누차에 걸쳐 국민 앞에 약속한 핵심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남궁석 신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만났다.

주지하듯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국민의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 될 이들 법안에 대해 연내 제정 및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줄기차게 이 정부에 전달해 왔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는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흑한 속의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안의 제정과 국정개혁을 약속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차 출국하기 전 '국정쇄신'을 다시 한번 약속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집권여당 역시 이에 발맞추어 최소한 핵심 3대 입법만큼은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그 약속을 또다시 뒤집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쇄신은 오히려 개혁후퇴의 약속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입

장이고 또 부패방지법은 실효성 없는 껌테기 법안인 기존의 법제정안을 고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오늘 오후 4시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3대개혁입법안의 법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당론확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당정개편 전후 당정협의, 5인소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침보다 더욱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고도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3대 입법을 약속대로 연내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이미 국민의 정부 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온갖 약속을 뒤집어가며 미루어 온 개혁이 내년이라고 가능하겠는가? 올해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년에는 오죽하겠는가?

이에 민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개혁입법의 회기내 처리에 대한 집권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집단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개혁실종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입법추진을 결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개혁입법추진약속을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하는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 까지 이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제·개정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 정부 전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개혁세력이 등을 돌린 국민의 정부를 원치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지막 경고에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참석자 명단>

박 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홍 근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지 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곽 노현	국가인권기구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방송대 교수)
김 서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이 장희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외대 교수)
노 진민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 진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김 기현	부패방지법입법 시민연대 사무국장
박 석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최 민	국가인권기구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한국장애인연맹 이사)
이 창수	국가인권기구공대위 투쟁조직위원회(새사회연대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1. 인권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인 6명 이상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3.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되,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하여 법무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
4. 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및 면직은 물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5. 국가기관의 조사거부는 "안전보장,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로 제한하고, 수사, 행정 및 재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6.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의 날조와 인멸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
7. 허위진정죄에 대한 수사는 인권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
8. 구금시설 직원이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나 면담에 참여하거나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해야 한다.
9. 인권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게 하고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0.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국제기구에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국가보안법 7조 조차 삭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보법을 대폭개정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 1)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는 냉전과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던 시점이었던 반면에 50여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여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 형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마땅하다.
- 2) 국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우리 나라의 인권문제의 핵심이었고,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찬성하고 있다.

3)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보법의 폐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보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이고 또 국보법 위반자의 84%를 차지하는 국보법 제7조3항을 존치시키는 방식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국보법의 연내 대폭개정을 공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기만적인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 중 국가보안법 제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핵심적인 독소조항인 바, 이 조항을 남겨 두고 개정 논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양심을 기만하는 것이다.

삭제 필요성의 요지는

- ① 위 법의 구성 형식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될 뿐 아니라,
- ② 또한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항이며 (제 7 조 3항, 5항),
- ③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개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 ④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면(7조 5항이 폐지되어), 단체의 행위를 따로이 처벌 한다는 것은 법 논리 상 문제가 있다.

부패방지법

반부패기본법의 추상성

- 부패방지법이 부패방지의 종합적 대책을 성문화한 통합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반부패기본법은 기존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기본법의 형식임

특별검사제를 제외시켜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사정대책이 없음

-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에 특별검사 발의권을 부여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직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화하지 않고 강령화하고 있음

- 금품·향응·선물 금지 및 처리절차, 업무 외 취업·소득제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로부터 제척 등 세세한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및 범위를 4급 이상(특정직 5급 이상),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해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부패입법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 참조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상임위원 15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4인, 시민단체가 3인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두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리 조사권과 처벌조항이 없음

- 반부패특별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비리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복 신고에 대해 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관기관에 이첩만 한다면 제보자는 구태여 위원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음.
- 내부고발의 성격상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두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의 유보적 표현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부패에 의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보상이 임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됨

- 반부패기본법은 보상을 임의규정화하고 있는데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기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의견

- 돈세탁 행위 자체를 불법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세탁, 횡령, 배임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포함하는 모든 음성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